

# 안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9-913
----------	-------

제출년월일 : 2025. 11. 11.

제 출 자 : 안 산 시 장

## 1. 제안이유

- 와동교육도서관 개관(예정)에 따라 중앙도서관 소관 업무 분장을 명확히 함으로써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행정 서비스를 제공
- 문화·교육 도시로서의 위상 강화 및 지역사회 공동체 활성화 기대

## 2. 주요내용

- 가. 중앙도서관 소관 사무에 와동교육도서관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신설함  
(안 제20조제6호)

## 3. 참고사항

- 가. 일부개정조례안 : 【붙임 1】
- 나. 신·구조문대비표 : 【붙임 2】
- 다. 관계법령발췌서 : 【붙임 3】
- 라. 관련사업계획서 : 해당사항 없음
- 마. 예산수반사항 : 해당사항 없음
  - ※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첨부 : 【붙임 4】
- 바. 사전예고(결과) : 【붙임 5】 의견있음
  - 제출의견 : 1건(반영 1건)
  - 입법예고 : 2025. 10. 15. ~ 2025. 10. 27. (12일간)
    - ※ 「안산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」 제3조제1호에 따라 단축
- 사. 기타 참고사항
  - 1) 현행조례 : 【붙임 6】
  - 2) 방침결정문 : 【붙임 7】

【붙임 1】

## 안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안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0조제6호나목부터 라목까지를 각각 다목부터 마목까지로 하고, 같은 호에 나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나. 와동교육도서관 운영에 관한 사항

### 부 칙

이 조례는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소관 실·국		기획경제실
입	기획예산과장	박 승 규
안	조직혁신팀장	장 유 경
자	담 당 자 (연락처)	이 광 희 (481-3108)

【붙임 2】

신·구조문 대비표

현행	개정안
<p>제20조(사업소의 조직 및 소관사무) 사업소의 조직과 사업소의 장이 맡아 처리하는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.</p> <p>1. ~ 5. (생략)</p> <p>6. 중앙도서관장은 다음 사무를 분장한다.</p> <p>가. (생략)</p> <p><u>&lt;신설&gt;</u></p> <p>나. ~ 라. (생략)</p> <p>7.·8. (생략)</p>	<p>제20조(사업소의 조직 및 소관사무) 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.</p> <p>1. ~ 5. (현행과 같음)</p> <p>6. -----</p> <p>-----.</p> <p>가. (현행과 같음)</p> <p><u>나. 와동교육도서관 운영에 관한 사항</u></p> <p><u>다. ~ 마.</u> (현행 나목부터 라목까지와 같음)</p> <p>7.·8. (현행과 같음)</p>